

---

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**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**

**2. 제출 및 회부일자**

- 제출일자 : 2006년 6월 5일
- 회부일자 : 2006년 6월 5일

**3. 제안이유**

-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격, 임명 및 위촉 기준, 심의 등에 관한 기준 사항이 일부 개정 또는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

**4. 주요골자**

-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등을 정함(안 제4조 제3항)
-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기하도록 해당분야 전문가를 1/4이상 참석하도록 함 (안 제4조제4항)
-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(안 제10조)

**5. 검토의견**

-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
본 조례의 개정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자격 및 위촉기준을 명확히 함은 물론 건축위원회의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.